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99. 9.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제안이유

○규제개혁 과제 반영 차원에서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거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 조항을 일부 폐지하고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시로부터 임차한 업체등이 건물 뒤편의 대지를 임차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그 대지를 공영유료주차장과 합병하여 운영하고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감면대상자를 동건물의 입주자 및 이용자로 확대하며

○공영주차장중 1급지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주차요금을 삽입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골자

○민영주차장의 설치신고를 통보로 변경하고 부설주차장중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의 설치신고 및 위반행위별 과태료조항중 일부를 폐지함.(안제4조 및 별표3)

○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중앙도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감면율을 50%로 함.(안제7조)

○공영주차장중 1급지 노외주차장의 월정기 주차요금을 60,000원으로 함(별표1)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로 한다.

제4조제3항중 “신고”를 “통보 접수”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역서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설치 통보 접수대장에 등재 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로 한다.

5. 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중앙동 공영유료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 50%감면

제9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1의 주차요금중 노외주차장 1급지 월정기 주차요금을 60,000원으로 신설하고 급지중 노외주차장 1급지의 “생연3동”을 “중앙동”으로 하고

비고의 8호중 “1급지 주차장에서의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를 “노상주차장에서의 1일 주차요금 및 월정기 주차요금과 노외주차장의 1급지 주차장에서의 1일 주차요금은 인정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기 준

(제19조 관련)

위 반 행 위 별	관 련 법 규	위반횟수 및 과태료금액		
		1차위반시	2차위반시	3차위반시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3항	20만원	40만원	50만원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자	제19조의7제2항	20만원	40만원	50만원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의10제2항	20만원	40만원	50만원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제25조제1항	20만원	40만원	5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설치통보접수대장
(제4조관련)

일련 번호	년월일	신 청 인		주 차 장					토지또는 건물소유 관 계
		주소	성명	명칭	위치	형태	주차면 적(m ²)	준공 일자	

별지 제5호 서식

1 회 주 차 권

(제6조 관련)

No.	No.
<u>○○○ 주차장 1회 이용권</u>	○○○ 주차장 1회 이용권
○ 주차가증시간 : 30분	○ 주차가능시간 : 30분
30분 초과이용시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며 본 이용권은 년 월 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분 초과이용시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으면 본 이용권은 년 월 일부터 1면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 두 천 시 장	동 두 천 시 장

☐ 규격 : 가로 22.5cm ×세로 7.5cm

☐ 색상 : 700원권 - 자주색, 500원권 - 하늘색, 400원권 흰색
 350원권 - 초록색, 300원권 - 노랑색

☐ 시마크 삽입

정 기 권
(제6조 관련)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생략) 1. (생략) 2. 민영주차장 :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 ----- -----
제4조(주차장의 설치)①-② <생략>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민영주차장의 설치 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④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설치신고를 수리하였을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신고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며, 민영주차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영주차장관리 기록카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규정승인기록대장에 내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의 설치)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통보접수 ----- ----- 1 - 3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거나 민영주차장의 설치 통보를 접수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설치 통보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생략) 1 - 4 (생략) (<u>신설</u>) 6 - 7(생략) ②제1항의 제2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의 감면은 신청에 의하며, 감면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u>시장이 대부한 구.생연3동사무소 건물을 임차한 입주자와 이용자가 중앙동 공영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 50% 감면</u>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 ----- -----
제9조(주차장의 표지)① (생략) ②노외주차장의 내부에 설치할 안내표지의 규격 및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외부에 설치할 안내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9조(주차장의 표지)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다만, 민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신고(구조변경 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부설 주차장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배치도 2. 반경 100미터이내의 유출입등 동선 처리도면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4. 사용자 사용승낙서(신청인이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대한 계획서(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함과 신고할 때에는 법시행규칙 제8조및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시장은 서류 및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부설주차장관리규정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하단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정안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 ② (생략) ③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에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 하고자할 때에는 영 제5조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제)</u>